

## ■ 최신 해외정보 - 러시아 ■

### 한국과 러시아 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

2013년 11월 13일 한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이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증면제협정은 발효에 요구되는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마지막 서면 통보가 접수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되며, 이에 따라 양국은 양국의 국내 절차를 이행한 후 2014년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근로, 거주, 유학 목적이 아닌 일반여권,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자가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60일간** 무사증 입국·체류·출국·경유가 가능하나 180일 중 90일 초과는 불가합니다. 다시 말해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1회 최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이며, 각 18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90일입니다.

한편, 무사증으로 러시아에 입국한 경우일지라도 7일을 초과하여 러시아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 이민등록에 관한 연방법률」(제정 2006년 7월 18일, 최근 개정 2013년 6월 7일) 제20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외국인 거주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2011년 법률 개정으로 3일에서 7일로 기간 연장됨).

### 2014년 외국인 근로자 취업 쿼터 확정

2013년 10월 31일 No.977 「외국인 근로자의 러시아 취업 수요 확정 및 2014년도 쿼터 확정에 관한 총리령」(이하 '총리령 제977호') 공포되었습니다. 총리령 제977호 제1조에 따르면 2014년도 외국인 쿼터의 총 규모는 1,631,586명입니다. 이중 회사(단체)의 관리자급 쿼터로 79,231명을 배정하였습니다.

### 2018 FIFA 월드컵 지원에 관한 특별법

러시아는 「2018 FIFA 월드컵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연방법률」(No. 108-FZ, 제정 2013년 6월 7일)을 제정하여, 월드컵 준비를 위한 연방차원의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동 법에 따라 월드컵 준비를 위해 국가가 토지수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보다 간명하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극동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제지원 확정

러시아는 「극동지역 투자 프로젝트 이행 촉진과 관련한 러시아연방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No. 267-FZ, 2013년 9월 30일 제정)을 통해 러시아연방 세법 규정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법에 의해 적용 받는 지역은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등을 포함한 극동지역 13개 주입니다. 동 법의 따른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요건 중의 하나로 투자금액이 5000만 루블(지역투자프로젝트 참여자 명부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과 5억 루블(지역투자프로젝트 참여자 명부에 편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이라는 기준입니다. 동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투자프로젝트 참여자(법인)의 경우 연방정부로 귀속되는 세금에 대한 세율을 0%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로 귀속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인화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법은 2014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